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부정수표단속법위반·위조유가증권행

사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8. 25. 2010노1660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항 소 인】

【검사】정태영

【변 호 인】 변호사 최명규

【원심판결】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5. 11. 선고 2010고단259 판결

【주문】

1

1.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.

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,000,000원에 처한다.

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압수된 위조수표 14매(증 제1호)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.

피고인 1로부터 4,000,000원을 추징한다.

피고인 1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2. 검사의 피고인 2(대법원 판결의 원심 공동피고인)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.

[이유]

】1. 항소이유의 요지

가. 피고인 1(양형부당)

원심의 형(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, 압수물 몰수 및 400만 원 추징)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.

나. 검사

1) 피고인 1에 대하여

가)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

피고인 1이 이 사건 위조수표를 유통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2에게 교부한 행위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한다.

나) 양형부당

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.

2) 피고인 2에 대하여(양형부당)

원심의 형(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압수물 몰수)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.

2. 판단

가. 피고인 1에 대하여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1) 직권판단

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,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제2의 다.

항 "피고인은 2009. 11. 중순 19:00경 위 ○○노래방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소외 2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제시하도록 위와 같이 위조한 수표들을 피고인 2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"를 "피고인은 2009. 11. 중순 19:00경 위 ○○노래방에서, 위 제2의 나.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수표들을 공소외 1에게 교부한 다음,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소외 2 앞에서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피고인 2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공소외 2가 위 수표를 진정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"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,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.

이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,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.

다만,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,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되므로,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.

- 2)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
-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,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, 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1,5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2의 연인인 공소외 2로 하여금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도록 한 후, 피고인 2와 공소외 2가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이를 미끼로 보증인인 공소외 2의 가족들에게 보증금 채무를 변제하라고 협박하기로 공모한 사실, ② 이를 위하여 피고인 1은 2009. 11. 6.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□□카 센터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액면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(수표번호 생략, 발행인 △△은행)을 복사하여 자기앞수표 총 14장을 위조한 사실, ③ 피고인 1은 2009. 11. 중순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○○노래방에서 공소외 1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4장 및 10만 원권 수표 10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주면서 "이 1,500만 원을 피고인 2에게 건네주고 네 명의로 된 차용증 한 장을 받아오라"고 지시한 사실, ④이에 공소외 1은 잠시 후 위 ○○노래방에서 피고인 2와 공소외 2를 만나 위 봉투를 피고인 2에게 주면서 " 피고인 1이 돈을 전해주고 차용증을 받아오라고 하였다"라고 말한 사실, ⑤ 피고인 2는 그 자리에서 "공소외 1에게 12월 13일까지 1,500만 원을 쓰고 갚겠다.
- 보증인 공소외 2도 공동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"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소외 1에게 교부한 사실, ⑥ 피고인 2는 공소외 1을 만나기 전에 공소외 2에게 "다른 사람으로부터 1,500만 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보증인이 되어달라"고 부탁하여 공소외 2가 이를 승낙하였고, 공소외 2는 피고인 2가 작성한 위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한 사실, ⑦ 피고인 2는 공소외 1로부터 위 봉투를 건네받은 후 봉투에서 10만 원권 수표 10장을 꺼내어 공소외 2에게 보여주면서 "봉투 안에 100만 원권 수표 14장 합계 1,400만 원이 더 들어있다"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-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,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공소외 2가 보는 앞에서 공소외 1을 통하여 피고인 2에 게 위조된 100만 원권 수표 14장 등을 건네줌으로써 1,500만 원을 빌려주는 것처럼 가장하고, 나아가 공소외 2로 하여금 피고인 2의 차용금채무를 보증하게 하였는바, 피고인 1의 위 행위는 위조된 100만 원권 수표 14장을 마치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공소외 1, 피고인 2를 통하여 공소외 2에게 제시한 것으로서 위조유가증권의 행사에 해당한다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.

나. 피고인 2에 대하여

피고인 2가 공소외 2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동기가 공소외 2 및 그 가족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 위한 것으로서 범행에 이른 동기가 불량하긴 하나, 마약 투약 후 더 이상의 범행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여 실제로 금원을 갈취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, 피고인 2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, 피고인 2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, 그밖에 피고인 2의 연령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,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.

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 1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,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.

[이유]

- 】1. 항소이유의 요지
- 가. 피고인 1(양형부당)

원심의 형(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, 압수물 몰수 및 400만 원 추징)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.

나. 검사

- 1) 피고인 1에 대하여
 - 가)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
- 피고인 1이 이 사건 위조수표를 유통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2에게 교부한 행위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한다.
 - 나) 양형부당

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.

2) 피고인 2에 대하여(양형부당)

원심의 형(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압수물 몰수)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.

- 2. 판단
- 가. 피고인 1에 대하여
- 1) 직권판단

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,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제2의 다.

항 "피고인은 2009. 11. 중순 19:00경 위 ○○노래방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소외 2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제시하도록 위와 같이 위조한 수표들을 피고인 2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"를 "피고인은 2009. 11. 중순 19:00경 위 ○○노래방에서, 위 제2의 나.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수표들을 공소외 1에게 교부한 다음,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소외 2 앞에서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피고인 2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공소외 2가 위 수표를 진정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"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,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.

이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,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.

다만,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,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되므로,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.

- 2)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
-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,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, 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1,5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2의 연인인 공소외 2로 하여금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도록 한 후, 피고인 2와 공소외 2가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이를 미끼로 보증인인 공소외 2의 가족들에게 보증금 채무를 변제하라고 협박하기로 공모한 사실, ② 이를 위하여 피고인 1은 2009. 11. 6.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□□카 센터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액면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(수표번호 생략, 발행인 △△은행)을 복사하여 자기앞수표 총 14장을 위조한 사실, ③ 피고인 1은 2009. 11. 중순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○○노래방에서 공소외 1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4장 및 10만 원권 수표 10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주면서 "이 1,500만 원을 피고인 2에게 건네주고 네 명의로 된 차용증 한 장을 받아오라"고 지시한 사실, ④ 이에 공소외 1은 잠시 후 위 ○○노래방에서 피고인 2와 공소외 2를 만나 위 봉투를 피고인 2에게 주면서 " 피고인 1이 돈을 전해주고 차용증을 받아오라고 하였다"라고 말한 사실, ⑤ 피고인 2는 그 자리에서 "공소외 1에게 12월 13일까지 1,500만 원을 쓰고 갚겠다.
- 보증인 공소외 2도 공동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"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소외 1에게 교부한 사실, ⑥ 피고인 2는 공소외 1을 만나기 전에 공소외 2에게 "다른 사람으로부터 1,500만 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보증인이 되어달라"고 부탁하여 공소외 2가 이를 승낙하였고, 공소외 2는 피고인 2가 작성한 위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한 사실, ⑦ 피고인 2는 공소외 1로부터 위 봉투를 건네받은 후 봉투에서 10만 원권 수표 10장을 꺼내어 공소외 2에게 보여주면서 "봉투 안에 100만 원권 수표 14장 합계 1,400만 원이 더 들어있다"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-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,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공소외 2가 보는 앞에서 공소외 1을 통하여 피고인 2에 게 위조된 100만 원권 수표 14장 등을 건네줌으로써 1,500만 원을 빌려주는 것처럼 가장하고, 나아가 공소외 2로 하여금 피고인 2의 차용금채무를 보증하게 하였는바, 피고인 1의 위 행위는 위조된 100만 원권 수표 14장을 마치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공소외 1, 피고인 2를 통하여 공소외 2에게 제시한 것으로서 위조유가증권의 행사에 해당한다.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.

- 나. 피고인 2에 대하여
- 피고인 2가 공소외 2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동기가 공소외 2 및 그 가족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 위한 것으로서 범행에 이른 동기가 불량하긴 하나, 마약 투약 후 더 이상의 범행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여 실제로 금원을 갈취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, 피고인 2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, 피고인 2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, 그밖에 피고인 2의 연령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,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.

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 1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,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.

[이유]

- 】1. 항소이유의 요지
- 가. 피고인 1(양형부당)

원심의 형(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, 압수물 몰수 및 400만 원 추징)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.

나. 검사

- 1) 피고인 1에 대하여
 - 가)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
- 피고인 1이 이 사건 위조수표를 유통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2에게 교부한 행위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한다.
 - 나) 양형부당

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.

2) 피고인 2에 대하여(양형부당)

원심의 형(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압수물 몰수)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.

- 2. 판단
- 가. 피고인 1에 대하여
- 1) 직권판단

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,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제2의 다.

항 "피고인은 2009. 11. 중순 19:00경 위 ○○노래방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소외 2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 처럼 제시하도록 위와 같이 위조한 수표들을 피고인 2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"를 "피고인은 2009. 11. 중순 19:00경 위 ○○노래방에서, 위 제2의 나.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수표들을 공소외 1에게 교부한 다음,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소외 2 앞에서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피고인 2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공소외 2가 위 수표를 진정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"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,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.

이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,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.

다만,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,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되므로,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.

- 2)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
-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,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, 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1,5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2의 연인인 공소외 2로 하여금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도록 한 후, 피고인 2와 공소외 2가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이를 미끼로 보증인인 공소외 2의 가족들에게 보증금 채무를 변제하라고 협박하기로 공모한 사실, ② 이를 위하여 피고인 1은 2009. 11. 6.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□□카 센터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액면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(수표번호 생략, 발행인 △△은행)을 복사하여 자기앞수표 총 14장을 위조한 사실, ③ 피고인 1은 2009. 11. 중순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○○노래방에서 공소외 1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4장 및 10만 원권 수표 10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주면서 "이 1,500만 원을 피고인 2에게 건네주고 네 명의로 된 차용증 한 장을 받아오라"고 지시한 사실, ④ 이에 공소외 1은 잠시 후 위 ○○노래방에서 피고인 2와 공소외 2를 만나 위 봉투를 피고인 2에게 주면서 " 피고인 1이 돈을 전해주고 차용증을 받아오라고 하였다"라고 말한 사실, ⑤ 피고인 2는 그 자리에서 "공소외 1에게 12월 13일까지 1,500만 원을 쓰고 갚겠다.
- 보증인 공소외 2도 공동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"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소외 1에게 교부한 사실, ⑥ 피고인 2는 공소외 1을 만나기 전에 공소외 2에게 "다른 사람으로부터 1,500만 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보증인이 되어달라"고 부탁하여 공소외 2가 이를 승낙하였고, 공소외 2는 피고인 2가 작성한 위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한 사실, ⑦ 피고인 2는 공소외 1로부터 위 봉투를 건네받은 후 봉투에서 10만 원권 수표 10장을 꺼내어 공소외 2에게 보여주면서 "봉투 안에 100만 원권 수표 14장 합계 1,400만 원이 더 들어있다"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-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,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공소외 2가 보는 앞에서 공소외 1을 통하여 피고인 2에 게 위조된 100만 원권 수표 14장 등을 건네줌으로써 1,500만 원을 빌려주는 것처럼 가장하고, 나아가 공소외 2로 하여금 피고인 2의 차용금채무를 보증하게 하였는바, 피고인 1의 위 행위는 위조된 100만 원권 수표 14장을 마치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공소외 1, 피고인 2를 통하여 공소외 2에게 제시한 것으로서 위조유가증권의 행사에 해당한다.

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.

나. 피고인 2에 대하여

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

피고인 2가 공소외 2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동기가 공소외 2 및 그 가족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 위한 것으로서 범행에 이른 동기가 불량하긴 하나, 마약 투약 후 더 이상의 범행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여 실제로 금원을 갈취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, 피고인 2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, 피고인 2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, 그밖에 피고인 2의 연령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,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.

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 1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,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.

[이유]

- 】1. 항소이유의 요지
- 가. 피고인 1(양형부당)

원심의 형(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, 압수물 몰수 및 400만 원 추징)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.

나. 검사

- 1) 피고인 1에 대하여
 - 가)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
- 피고인 1이 이 사건 위조수표를 유통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2에게 교부한 행위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한다.
 - 나) 양형부당

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.

2) 피고인 2에 대하여(양형부당)

원심의 형(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압수물 몰수)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.

- 2. 판단
- 가. 피고인 1에 대하여
- 1) 직권판단

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,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제2의 다.

항 "피고인은 2009. 11. 중순 19:00경 위 ○○노래방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소외 2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제시하도록 위와 같이 위조한 수표들을 피고인 2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"를 "피고인은 2009. 11. 중순 19:00경 위 ○○노래방에서, 위 제2의 나.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수표들을 공소외 1에게 교부한 다음,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소외 2 앞에서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피고인 2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공소외 2가 위 수

표를 진정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"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,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.

이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,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.

다만,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,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되므로,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.

- 2)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
-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,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, 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1,5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2의 연인인 공소외 2로 하여금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도록 한 후, 피고인 2와 공소외 2가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이를 미끼로 보증인인 공소외 2의 가족들에게 보증금 채무를 변제하라고 협박하기로 공모한 사실, ② 이를 위하여 피고인 1은 2009. 11. 6.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□□카 센터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액면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(수표번호 생략, 발행인 △△은행)을 복사하여 자기앞수표 총 14장을 위조한 사실, ③ 피고인 1은 2009. 11. 중순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○○노래방에서 공소외 1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4장 및 10만 원권 수표 10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주면서 "이 1,500만 원을 피고인 2에게 건네주고 네 명의로 된 차용증 한 장을 받아오라"고 지시한 사실, ④ 이에 공소외 1은 잠시 후 위 ○○노래방에서 피고인 2와 공소외 2를 만나 위 봉투를 피고인 2에게 주면서 " 피고인 1이 돈을 전해주고 차용증을 받아오라고 하였다"라고 말한 사실, ⑤ 피고인 2는 그 자리에서 "공소외 1에게 12월 13일까지 1,500만 원을 쓰고 갚겠다.
- 보증인 공소외 2도 공동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"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소외 1에게 교부한 사실, ⑥ 피고인 2는 공소외 1을 만나기 전에 공소외 2에게 "다른 사람으로부터 1,500만 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보증인이 되어달라"고 부탁하여 공소외 2가 이를 승낙하였고, 공소외 2는 피고인 2가 작성한 위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한 사실, ⑦ 피고인 2는 공소외 1로부터 위 봉투를 건네받은 후 봉투에서 10만 원권 수표 10장을 꺼내어 공소외 2에게 보여주면서 "봉투 안에 100만 원권 수표 14장 합계 1,400만 원이 더 들어있다"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-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,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공소외 2가 보는 앞에서 공소외 1을 통하여 피고인 2에 게 위조된 100만 원권 수표 14장 등을 건네줌으로써 1,500만 원을 빌려주는 것처럼 가장하고, 나아가 공소외 2로 하여금 피고인 2의 차용금채무를 보증하게 하였는바, 피고인 1의 위 행위는 위조된 100만 원권 수표 14장을 마치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공소외 1, 피고인 2를 통하여 공소외 2에게 제시한 것으로서 위조유가증권의 행사에 해당한다.

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.

- 나. 피고인 2에 대하여
- 피고인 2가 공소외 2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동기가 공소외 2 및 그 가족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 위한 것으로서 범행에 이른 동기가 불량하긴 하나, 마약 투약 후 더 이상의 범행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여 실제로 금원을 갈취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, 피고인 2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, 피

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

고인 2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, 그밖에 피고인 2의 연령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,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.

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 1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,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.

[이유]

- 】1. 항소이유의 요지
- 가. 피고인 1(양형부당)

원심의 형(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, 압수물 몰수 및 400만 원 추징)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.

나. 검사

- 1) 피고인 1에 대하여
 - 가)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

피고인 1이 이 사건 위조수표를 유통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2에게 교부한 행위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한다.

나) 양형부당

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.

2) 피고인 2에 대하여(양형부당)

원심의 형(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압수물 몰수)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.

- 2. 판단
- 가. 피고인 1에 대하여
- 1) 직권판단

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,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제2의 다.

항 "피고인은 2009. 11. 중순 19:00경 위 ○○노래방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소외 2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제시하도록 위와 같이 위조한 수표들을 피고인 2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"를 "피고인은 2009. 11. 중순 19:00경 위 ○○노래방에서, 위 제2의 나.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수표들을 공소외 1에게 교부한 다음,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소외 2 앞에서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피고인 2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공소외 2가 위 수표를 진정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"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,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.

이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,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.

다만,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,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되므로,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.

- 2)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
-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,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, 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1,5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2의 연인인 공소외 2로 하여금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도록 한 후, 피고인 2와 공소외 2가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이를 미끼로 보증인인 공소외 2의 가족들에게 보증금 채무를 변제하라고 협박하기로 공모한 사실, ② 이를 위하여 피고인 1은 2009. 11. 6.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□□카 센터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액면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(수표번호 생략, 발행인 △△은행)을 복사하여 자기앞수표 총 14장을 위조한 사실, ③ 피고인 1은 2009. 11. 중순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○○노래방에서 공소외 1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4장 및 10만 원권 수표 10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주면서 "이 1,500만 원을 피고인 2에게 건네주고 네 명의로 된 차용증 한 장을 받아오라"고 지시한 사실, ④ 이에 공소외 1은 잠시 후 위 ○○노래방에서 피고인 2와 공소외 2를 만나 위 봉투를 피고인 2에게 주면서 " 피고인 1이 돈을 전해주고 차용증을 받아오라고 하였다"라고 말한 사실, ⑤ 피고인 2는 그 자리에서 "공소외 1에게 12월 13일까지 1,500만 원을 쓰고 갚겠다.
- 보증인 공소외 2도 공동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"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소외 1에게 교부한 사실, ⑥ 피고인 2는 공소외 1을 만나기 전에 공소외 2에게 "다른 사람으로부터 1,500만 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보증인이 되어달라"고 부탁하여 공소외 2가 이를 승낙하였고, 공소외 2는 피고인 2가 작성한 위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한 사실, ⑦ 피고인 2는 공소외 1로부터 위 봉투를 건네받은 후 봉투에서 10만 원권 수표 10장을 꺼내어 공소외 2에게 보여주면서 "봉투 안에 100만 원권 수표 14장 합계 1,400만 원이 더 들어있다"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-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,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공소외 2가 보는 앞에서 공소외 1을 통하여 피고인 2에 게 위조된 100만 원권 수표 14장 등을 건네줌으로써 1,500만 원을 빌려주는 것처럼 가장하고, 나아가 공소외 2로 하여금 피고인 2의 차용금채무를 보증하게 하였는바, 피고인 1의 위 행위는 위조된 100만 원권 수표 14장을 마치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공소외 1, 피고인 2를 통하여 공소외 2에게 제시한 것으로서 위조유가증권의 행사에 해당한다.

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.

- 나. 피고인 2에 대하여
- 피고인 2가 공소외 2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동기가 공소외 2 및 그 가족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 위한 것으로서 범행에 이른 동기가 불량하긴 하나, 마약 투약 후 더 이상의 범행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여 실제로 금원을 갈취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, 피고인 2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, 피고인 2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, 그밖에 피고인 2의 연령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,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.

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

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 1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,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.

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